

#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(구 전담인력) 성과급 지급 안내

(사회참여지원부, 2020. 1. 14.(화))

## □ 성과급(처우개선비) 관련 예산 활용 방안

- 지자체 및 수행기관별 배정받은 전담인력 1인 기준 성과급 총액 1,257,000원, 설·추석이 속한 달의 자치단체장이 정한 날에 50% 금액인 628,500원으로 분할(연2회, 설·추석)하여 지급\*

- 명절수당 또는 지자체 자체 명칭\*\* 활용해 지급 가능하며, 연2회(설·추석)에 지급

\* 성과급 지급 대상: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점(성과급(처우개선비) 지급)에 노인일자리 담당자(구 전담인력)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, 해당시점 후 입사자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 등은 불가

\*\* (예시) 노인일자리 담당자(구 전담인력) 특별수당 등

- 시·군·구에서 관할지역 내 수행기관 전담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

-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기관에서 전담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,

- 성과급(처우개선비) 지급으로 인한 퇴직금\* 인상분 제외 후 성과급(처우개선비)을 지급하고, 퇴직금 지급 시점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금\*\*을 지급 / 혹은 수행기관이 성과급(처우개선비) 지급으로 인한 퇴직금 인상분 자부담 가능

\* 퇴직금 지급대상: '19년 중도입사자 중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인일자리 담당자(구 전담인력) 및 '20년 신규 채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 등에 따라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(구 전담인력)에 한하여 지급(2020년 사업지침 p.27 참조)

- 성과급(처우개선비)를 수행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상 전담인력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, 지자체 협의 후 전액 (628,500원, 연2회) 지급 가능

### 전담인력 성과급(처우개선비) 지급 예시

	퇴직금 인상분(예시)*	지급금액1 (설)	지급금액2 (추석)
지자체에서 지급	-	628,500원	628,500원
수행기관에서 지급	85,346원	(성과급에서 제외 후 지급시)	(성과급에서 제외 후 지급시)
		628,500원-42,673원=585,827원	628,500원-42,673원=585,827원
		(수행기관에서 퇴직금 인상분 자부담시)	(수행기관에서 퇴직금 인상분 자부담시)
		628,500원	628,500원

\* 퇴직금 인상분(예시)은 2020년 입사하여 1년 동안 근무하는 경우(성과급(처우개선비) 2회 수령)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산하였으며, 퇴직금 지급 시점에 이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/ **퇴직금 인상분(예시)은 전담인력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필히 확인 요망**

- 성과급(처우개선비)을 수행기관에서 지급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인상분을 노인일자리 사업비(부대경비)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